

2) 휴직의 횟수

가) 육아휴직

- 육아휴직은 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2)
-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(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)

나) 육아 휴·복직의 허가

■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

- 가)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,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
(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)
- 나)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,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·복직을 허가하되,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
- 다)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
-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휴·복직 가능
- 복직과 동시에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
- 학기단위의 의미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임(다만, 타교복직자의 경우 인사별명상 3월 1일~8월 31일, 9월 1일~2월 말일로 적용)

마. 휴직신청서류

- 1) 휴직신청서 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, 휴직목적 등을 명시 -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
- 2) 휴직사유 입증서류
 - 가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 - 나)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다)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「의료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)

※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·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
 - 라)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